

전주지방법원 2022. 7. 20 선고 2021나27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

담당변호사 온성욱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연주

변 론 종 결 2022. 6. 15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2. 9. 선고 2019가단57990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1.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9. 2. 26.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피고는 C에게 별지2.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.

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.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미리, 판사 김범준, 판사 신태광

